아크로 리버스카이 무순위(2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 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구분	내용
재당첨제한 10년 적용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계약의사가 없는 묻지마 청약 등으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관련 제한사항 (중도금, 잔금대출)	※ 2025.06.27. 발표된「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및 2025.10.15. 발표된「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중도금대출(LTV 40%) 및 잔금대출(주택가격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의 경우 대출한도 4억원, **25억원 초과의 경우 2억원**) 실행 시 제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불가 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529-020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10년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6.05.)로부터 3년 (단, 3년 내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제)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6.05.13.(수)	2026.09.23.(수)	2026.09.28.(월)	2026.10.06.(화)	2026.10.12.(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23.(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20**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13.(수)**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116**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09.28.(월)	2026.10.06.(화)	2026.10.12.(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아크로 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 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청약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동작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6.05.)**로부터 **3년간(단, 3년 내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제)** 적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9층, 10개동 총 987세대(조합원 522세대, 임대 172세대, 보류지 8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285세대의 **잔여 3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220	01	140.8560P	140P	3	106	1801
					107	2801
					108	2501
	합 계			**3**	-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동/호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계약시	2026.11.12.	2027.04.20.	2027.04.20.	2027.09.20.	2028.06.20.	2028.11.20.	2029.04.20.	
140P	106동 1801호	3,427,013,310	1,320,624,270	132,062,420	4,879,700,000	100,000,000	387,970,000	487,970,000	487,970,000	487,970,000	487,970,000	487,970,000	487,970,000	1,463,910,000
	107동 2801호 108동 2501호	3,460,934,400	1,333,696,000	133,369,600	4,928,000,000	100,000,000	392,800,000	492,800,000	492,800,000	492,800,000	492,800,000	492,800,000	492,800,000	1,478,400,000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인지세,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이며, 전체 분양대금 중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1~4회차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5~6회차 중도금(분양대금의 20%)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전체 분양대금 중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시 계약자가 사업주체(조합) 대납이자를 조합에 상환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에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 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본 제출 불가)**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1차, 2차),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301-0385-2171-01	디엘이앤씨(주),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상기 아파트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Ⅰ)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Ⅱ), (Ⅲ)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301호 계약자 → '1010301홍길동'

※ 계약금 납부는 무통장 입금 및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전시관 수납 불가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정당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Ⅰ) 발코니확장 공사비

※ 추가선택품목(Ⅰ) 발코니확장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동시에 계약 진행해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비고
		계약시	2027.04.20.	입주지정일	
140P	29,000,000	2,900,000	8,700,000	17,400,000	-

■ **추가선택품목(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디엘이앤씨(주)
계약체결 일정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 상기 추가선택품목(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Ⅱ), (Ⅲ)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301호 계약자 → '1010301홍길동'
※ 계약금 납부는 무통장 입금 및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전시관 수납 불가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Ⅰ) 발코니확장 계약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 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발코니(보조주방)과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을 제외한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자재조달 및 세대공사 등 공사여건 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다용도실)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로 시공한 입주자는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등으로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로 시공한 입주자는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빌코니(보조주방),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일반, 주방) 배면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목창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시공자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기본형) 단위세대는 발코니 샤시 대신 분합문이 설치되고, 발코니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어, 외부입면이 확장형 단위세대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는 현재 LX하우시스 창호로 구현되었으나, 외부창호 제조사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에 따라 열관류율 및 TDR값은 법규를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Ⅱ)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추가선택품목(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동시에 계약을 진행해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약식표기(타입)	제조사	구성	판매가격	비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택1)	140P	LG/삼성	일반형:거실+주방+침실1/실내기3대	6,090,000	※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제품모델은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시 별도안내
		LG/삼성	일반형:거실+주방+침실1+침실4/실내기4대	7,590,000	
		LG/삼성	일반형: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실내기6대	9,680,000	
		LG	프리미엄형:거실+주방+침실1/실내기3대	6,690,000	
		LG	프리미엄형:거실+주방+침실1+침실4/실내기4대	8,390,000	
		LG	프리미엄형: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실내기6대	10,88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번호는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추가선택품목 판매 시 안내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 당초 계약모델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공정상의 사유로 계약 이후 추가, 변경, 해지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제조사 사양에 따라 실내기 또는 실외기 규격이 정해집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수량에 따라 실외기 용량 또는 개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등기구, 환기디퓨져등 천장 시설물 위치에 따라 실내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디퓨져, 욕실 배기팬 , 스프링클러 ,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바람 토출구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외부 온도 대비 5도씨 이내로 설정하며 바람세기를 강풍으로 바람날개 방향을 좌우, 상하 반복하여 움직여서 가동해 주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 설치 공간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일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별도의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운전 시 반드시 실외기실 그릴을 개방해야 하며, 그릴을 닫고 운전하거나 그릴창 주변에 물건을 적치할 경우 성능 및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경우 배관, 실내기, 실외기 추가 설치 및 전기 추가 공사가 필요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배관, 실내기 및 실외기등 추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에어컨은 하향실 피난사다리 및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미선택 시 추후 입주자 별도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홈네트워크 시스템 및 월패드 시스템 연동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LG일반형과 LG프리미엄형은 세대 내 혼용 선택 불가합니다. (LG 제조사 기술적 호환 불가)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천장형 냉매배관이 설치되어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가 불가합니다. (입주 후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공사가 필요함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LG브랜드 기준으로 천장형 냉매배관이 제공됩니다. 입주 후 삼성전자 등의 타사 에어컨 제품 설치 시 호환성 및 성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Ⅱ)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계약 시	2027.04.20.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

■ **추가선택품목(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디엘이앤씨(주)
계약체결 일정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 상기 추가선택품목(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Ⅰ), (Ⅲ)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301호 계약자 → '1010301홍길동'

※ 계약금 납부는 무통장 입금 및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전시관 수납 불가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Ⅲ)

- 추가선택품목(Ⅲ)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 디엘이앤씨(주)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금액에는 기본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고 체결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단종(성능 개선,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 시 동 제조사의 동급 이상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조사의 제품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으며, 변경 제품을 확정하기 전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상품 구성, 제품 모델, 디자인(색상포함), 설치 위치, 판매 금액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공정상(발주 및 설치)의 사유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공급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스타일 선택 옵션은 인테리어 스타일의 통일성을 위하여 개별 분리 판매 및 스타일 간 교차 선택이 불가하며, 스타일별 디자인(색상 포함), 재질 및 구성은 상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스타일 옵션 선택 시, 스타일과 연계된 개별 품목은 동일한 스타일 범위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전,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디자인(색상 포함),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6.05.13.)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0.06.(화) ~ 2026.10.15.(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0.06.(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

-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 일시 : 2026.10.12.(월) 10:00~12:00
-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3.(수)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 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제출처 : DL이앤씨(주)]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본인과의 관계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등 혼인 관계 확인(본인 및 배우자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서류 포함)	-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비,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해야함
	○		인지세 납부 (전자수입인지)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아파트 공급계약서 수입인지 세액 : 10억원 초과 35만원 * 계약자 부담액 : 10억원 초과 17만 5천원(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 추가선택품목계약서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계약자 부담액 :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각각 100%씩 납부) - 수입인지 구입처 1.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2.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서류 : ① 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인정 안됨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의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위임용 / 제출처 : DL이앤씨(주)]
	○		신분증 및 도장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예비순번 순서대로 별도 통보 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122(대방동, 의당빌딩3층)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에이동(마곡동, 원그로브)
법인등록번호	110171-0067832	110111-7736808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acro.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

■ **분양 문의 : 02-529-0205**